

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3. 12. 22
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12. 17
- 다. 회부일자 : 93. 12. 18
- 라. 상정일자 : 93. 12. 22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자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토지평가위원수의 제한이 없으며
-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제3조(구성) 제1항에 의하면 11-1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
- 94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등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로 20인이내로 확대 구성토록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조례는 1989년 11월 21일 조례 제147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토지 초과이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토지세등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명~15명이내를 15명~20인이

내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평가심의로 공평과세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
위원수 증원은 좋다고 생각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- 현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이 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지만은 공무원 및 중개인 중개사를 줄
이고 주민의 대표자를 확대 임명하도록 지적하였습.

중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주민의 대표를 확대하여 임명할 용의는?

- 사무감사 기록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숙지하였으므로 본 조례(안) 중요
내용이 위원수의 확대 구성이므로 주민의 대표를 확대하겠으며 중개업자의 역할에 대하여
는 많은 자문을 얻었다고 생각됨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소수의견 : 없음.